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6억 7천 7백만원과 같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2021년도					증감율		
구	분	예	예산		증감		一 石	
		당초	기정	추경예산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76,705	676,705	676,705	-	_	_	_
시	세	676,705	676,705	676,705	_	_	_	-
세외	경상적	668,809	668,809	668,809	_	_	_	_
수입	임시적	7,896	7,896	7,896				

2. 세 출

○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9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38억 2천 6백만원 대비 6.51% 감액** (9억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2021년도					증감율	
구 분		예산		>거세시	증감				
			당초	기정	추경예산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3,826,002	13,826,002	12,925,711	△900,291	△900,291	△6.51%	△6.51%
행	소	: 계	13,826,002	13,826,002	12,925,711	△900,291	△900,291	△6.51%	△6.51%
정 관 리	행정	운영경비	600,000	600,000	600,000	_	_	_	_
리	사	업 비	13,226,002	13,226,002	12,325,711	△900,291	△900,291	△6.81%	△6.81%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2021 예산			당초예산대비			
세부사업별			제1회	증감		비율	
	당초	기정	추경예산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3,826,002	13,826,002	12,925,711	△900,291	△900,291	△6.5%	△6.5%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1,050,992	1,050,992	916,897	△134,095	△134,095	△12.8%	△12.8%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014,857	1,014,857	817,661	△197,196	△197,196	△19.4%	△19.4%
신임자과정 운영	931,460	931,460	372,460	△559,000	△559,000	△60.0%	△60.0%
교육훈련장비 확충	105,787	105,787	95,787	△10,000	△10,000	△9.5%	△9.5%

Ⅱ. 검토의견

○ 금번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등 총 4건에 9억원(6.51%)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중 현장체험 미운영 등에 따른 감액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2천 4백만원(12.2%)과 '포상금' 1천만원(42.9%)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16,897	1,050,992	△134,095					
사무관리비	897,497	1,021,592	△124,0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40	6,040	_					
포상금	13,360	23,360	△10,000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현장학습비와 5급 승진리더과정 비대면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외부 봉사활동 예산, 문화예술공연비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당초 예산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재직자단기과정 현장학습비 및 교육운영비 95,278천원 3급 승진리더과정 (현장체험비 723천원*10인*1회) 7,230천원 	○ 재직자단기과정 현장학습비 및 교육운영비 = 78,648천원 (△16,630천원) - 3급 승진리더과정 (△7,230천원 = 현장체험비 723천원*10인*1회) = 0원 (△7,230천원)	['] 21년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미운영으로 감액
	- 4급 승진리더과정 (현장체험비 376천원*25인*2회) = 18,800천원	- 4급 승진리더과정 (△9,400천원= 현장체험비 376천원*25인*1회) = 9,400천원 (△ 9,400천원)	총 2회 중 1기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 미운영으로 감액

과목구분	2021년 당초 예산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 직무전문과정 48,948,000 = 48,948천원	- 직무전문과정 48,948,000 = 48,948천원	변동 없음
	○ 5급승진리더과정 강사료 및 원고료 = 118,480천원	○ 5급승진리더과정 강사료 및 원고료 (△28,000천원≒ 강사료 25,200천원+원고료 2,880천원) = 90,480천원 (△28,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실시에 따라 1,3기 합반 (2개반→1개반) 운영으로 감액
	○ 5급승진리더과정 문화예술체험 = 27,005천원	○ 5급승진리더과정 문화예술체험 = 21,00 5천원 (△6,000 천원)	
	- 문화예술체험 35,000원*543명 = 19,005천원	- 문화예술체험 35,000원*543명 = 19,005천원	변동 없음
	- 문화예술공연비(입교식) 2,000,000원*4회 = 8,000천원	- 문화예술공연비(입교식) (△6,000천원= 입교식공연 2,000천원*3회) = 2,000천원 (△ 6,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입교식 공연 미실시분 감액
	○ 5급승진리더과정 학습용품등 부대비용 = 16,965천원	○ 5급승진리더과정 학습용품 등 부대비용 (△5,000천원≒ 약 10천원* 약 500명(1~3기) = 50,000천원 (△ 5,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실시(1~3기)로 교육생 학습용품 수요감소에 따른 감액
	○ 5급승진리더과정 봉사활동 5,973,000 = 5,973천원	○ 5급승진리더과정 봉사활동 (△5,973천원= 중·간식비 11천원*543명) = 0원 (△5,973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실시로 현장학습관련 감액
	○ 5급승진리더과정 학습평가수당 3,492,000 = 3,492천원	○ 5급승진리더과정 학습평가수당 (△3,492천원 ※기존 e-러닝 평가 활용) = 0원 (△3,492천원)	학습평가 방법을 주관식 평가에서 e-러닝 평가로 변경하여 출제수당 등 전액 미집행
	○ 교재발간비 = 99,000천원	○ 교재발간비 = 40,000 천원 (△59,000 천원)	
	- 교재 = 84,000천원	- 교재 (△44,000천원=약6천원*7,333부) = 40,000천원 (△ 44,000천원)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과정 교재 온라인제공하여 감액
	- 안내서 5,000부*3,000원 = 15,000천원	- 안내서 (△15,000천원=5,000부*3,000원) = 0원 (△ 15,000천원)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장소 안내서 전액 감액
포상금	○ 교육유공자, 우수자 시상금 23,360,000원 = 23,360천원	○ 교육유공자, 우수자 시상금 (△10,000천원= 약 100천원*단기 과정 100회) = 13,360천원 (△10,000 천원)	비대면 교육에 따른 교육과정 시상대상자 감소로 감액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 역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교육 확대와 외부 체험 활동 미실시에 따른 감액 조정인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만족도가 하락('19년 4.46점→'20년 4.41점→'21년 4.23점) 추세에 있는 바, 만족도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현황]

2019년도	○ 승진자 778명, 재직자 11,236명, 평균 만족도 4.46점
2020년도	○ 리더십교육 1,943명, 직무교육 등 5,230명, 평균 만족도 4.41점(12.31.기준)
2021년도	○ 리더십교육 632명, 재직자 3,133명, 평균 만족도 4.23점(5.10.기준)

○ 또한,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외부 행사를 전면 미실시 하는 것보다는 방역수칙에 근거한 소규모 그룹별로 진행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미실시에 따른 감액

○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사업 중 '국제화여비'를 50.0%(1억 9천 7백만원)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17,661	1,014,857	△197,196
사무관리비	522,484	522,484	_
국제화여비	197,197	394,393	△197,196
공무원 교육여비	89,780	89,780	-
포상금	8,200	8,200	-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사업은 시·자치구 6급 공무원(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연 2회) 직무전문·리더쉽 역량·핵심가치·글로벌(외국어)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상반기글로벌정책연수 미시행분을 감액(1억 9천 7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예산(안)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국제화여비	○ 글로벌정책연수 2,943,231원*134명 = 394,393천원	○ 글로벌정책연수 2,943,231원*67명 ≒197,197천원 (△197,196천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기 글로벌정책연수 미실시 감액

- 인재개발원은 당초 2021년 글로벌정책연수 실시(134명)를 위해 국제화 여비(3억 9천 4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연수계획이 미실시 되었는 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교육미실시분에 대한 예산 감액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글로벌 정책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2020년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등을 감안한 추가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사전에 비대면으로 학습을 이수한 뒤, 코로나 19 상황 호전에 따라 사후 기관방문을 하는 인사혁신처의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글로벌정책연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4년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결산 및 집행현황]

(2021년 5월 10일 기준)

(2021 6 0 6 10 6 7 6 7						(11 - 111)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1,669,385	_	-	1,669,385	1,633,466	_	35,919
2019	1,758,128	_	I	1,758,128	1,680,869	_	77,259
2020	839,703	_	_	839,703	240,846	_	598,857
2021	1,014,857	_	-	1,014,857	153,710	_	861,147

- 한편, 글로벌정책연수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년이상 시·자치구 6급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향후, 서울시 글로벌 정책연수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 국외훈련 공무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년도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 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이상 1년미만은 만 50세이하인 자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워
-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 일반훈련은 4~7급 경력직 공무원, 직무훈련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서 선발

(단위 : 천원)

다. 신임자과정 운영중 비대면교육 확대로 인한 감액

○ "신임자과정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5억 2천 4백만원(60.6%)과 '포상금' 3천 5백만원(53.0%)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72,460	931,460	△559,000		
사무관리비	341,400	865,400	△524,000		
포상금	31,060	66,060	△35,000		

(단위 : 천원)

○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신임자 교육과정 비대면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단체 체육활동 미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5억 2천 4백만원)'와 '포상금(3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적기에 감액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강사료, 원고료 = 622,920 천원	○ 강사료, 원고료 (△310,000천원≒ 강사료 308,880천원+ 원고료 1,120천원) = 312,920천원 (△310,000천원)	교과 비대면운영 및 교육기간 단축(5주-)4주)에 따른 강의횟수 감소분 반영하여 감액 ·강사료 = 360천원*858회분 감 = 308,880천원 감액 ·원고료 = 1,120천원 감액
사수판리미	○ 교육용품 구매비 = 65,000 천원	○ 교육용품 구매비 = 10,000 천원 (△55,000 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실시로 교육생 학습용품 수요감소와 현장학습 소모품 미구입에 따른 감액
	○ 문화예술관람 35,000원*2,600명 = 91,000천원	○ 문화예술관람 = 0원 (△91,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따른 체험학습 미실시로 감액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 단체체육활동 = 56,400 천원	○ 단체체육활동 = 0원 (△ 56,4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따른 체험학습 미실시로 감액
	- 체육관 대관 2,000,000원*8회 = 16,000천원	- 체육관 대관 = 0원	
	- 체육활동 중식비 8,000원*2,600명 = 20,800천원	- 체육활동 중식비 = 0원	
	- 체육활동 간식비 3,000원*2,600명 = 7,800천원	- 체육활동 간식비 = 0원	
	- 체육활동 보험료 3,000원*2,600명 = 7,800천원	- 체육활동 보험료 = 0원	
	- 체육활동 부대비용(체육물품 등) 500,000원*8회 = 4,000천원	- 체육활동 부대비용(체육물품 등) = 0원	
	○ 현충원 참배 = 11,600천원	○ 현충원 참배 = 0원 (△11,600 천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따른 체험학습 미실시로 감액
	- 차량임차 220,000원*6대*8회 = 10,560천원	- 차량임차 = 0원	
	- 현충원 참배 화환 130,000원*8회 = 1,040천원	- 현충원 참배 화환 = 0원	
포상금	○ 교육생 시상비 = 66,060 천원	○ 교육생 시상비 = 31,060천원 (△35,000천원)	비대면 교육에 따른 학습평가 미실시 교과목으로 인한 시상대상자 감소로 감액

○ 다만, 현장탐방과 체험프로그램을 미실시 내지 축소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유사 사례·영상 활용 강의 및 자기주도학습 등 현장학습과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재개발원은 불규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향후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교육훈련장비 확충

○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 중 '사무관리비' 1천만원(18.2%)을 감액 조정 하려는 것임.

□ 예사(아) 총곽

□ 예산(안) 총괄 (단위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5,787	105,787	△10,000	
사무관리비	45,000	55,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0,787	50,787	-	

○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은 교육시설 내 교육기자재 구입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소모품 수요감소에 따른 구입비용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및 유지보수 55,000,000 = 55,000천원	○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및 유지보수 45,000,000 (△10,000천원= 범프로젝터 엔진크리닝·소모품 교체비 400천원*25대) = 45,000천원 (△10,000천원)	비대면 교육에 따른 5월말 기준 소모품 수요감소에 따른 구입비용 감액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집합 교육 미실시로 시청각 교육기자재 사용이 없는 바, 인재개발원은 미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제품 기능 유지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포상금(시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 2021년 제1회 추가결정예산은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과 "역량 평가 이해과정 운영" 포상금은 감액조정하지 않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서 '포상금' 1천만원(42.9%), "신임자과정 운용"에서 '포상금' 3천 5백만원(53.0%)을 감액하고 있는 바, 각 사업별 포상금 유지 및 감액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는 "신임자과정 운영"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서 '포상금(시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포상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재개발원 '포상금' 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천원)

과목구분	사업명	2021년 편성내역 (산출기초 포함)	집행현황(5.20기준)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 교육훈련발전대회 시상금 800 - 300천원×최우수 1팀=300 - 100천원× 우수 5팀=500	○ 미집행(11~12월 집행예정)
포상금	재직자과정운영	○ 유공자·우수자 시상금 23,320 - 100천원×200회 =20,000 - 100천원×332인 = 3,320	○ 미집행(비대면교육 미지급)

과목구분	사업명	2021년 편성내역 (산출기초 포함)	집행현황(5.20기준)
	6급 미래인재	○ 교육유공자, 우수자 시상금 8,200	○ 3,000천원
	양성과정 운영	- 50천원×82인×2기=8,200	- 시상금 1기 3,000천원 집행(진행중)
	신임자 과정 운영	○ 교육생 시상비용 66,060 -(본교육)98천원×15명×4번×8가수= 46,560 -(보충교육)98천원×5명×4번×10가수= 15,680 -(우정상등) = 3,820	○ 23,520천원 -(본교육) 98천원×10인×4반×6기수
	역량평가	○ 교육유공자, 우수자 시상금 1,600	○ 1,100천원
	이해과정 운영	- 20천원×분반장8명×10회=1,600	- 20천원×분반장11명×5회=1,100천원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18페이지(행정안전부)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 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02. 성과상여금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1